

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총동문회 회칙

제1장 총칙

제 1 조(명칭) 본회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총동문회(이하 본회)라 칭한다.

제 2 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 3 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및 학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(사업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관한 사업
2. 모교와 학과발전 및 장학에 관한 사업
3. 회보 및 명부발간 사업
4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5 조(조직)

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기간조직과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.

1. 기간조직은 각 기별 동창회로 한다.
2. 산하조직은 각 시도지부, 해외지부 등 직장별 분회와 동창의 각종 모임으로 한다.

②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회칙에 준하여 별도로 정한다

제 6 조(규정)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은 본 회칙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이를 제정한다.

제2장 회원

제 7 조(구성 및 자격)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,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정회원: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(경영대학 이전 경영학부, 경영학과, 회계학과, 무역학과, 경영정보학과 등을 총칭)을 졸업한 자 및 경영대학에 재학하였던 자로서 이사회에 추인을 받은 자
2. 명예회원: 다음 해당자로서 이사회에 추인을 받은 자
 - i. 모교 경영대학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
 - ii. 모교 대학원 경영대학을 마친 자
 - iii. 모교 타학과 졸업생으로서 모교 및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

제 8 조(권리와 의무)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정회원은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, 명예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 참석권 및 의견진술권을 갖는다.
2. 본회의 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

제3장 임원

제 9 조(임원) 본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장: 1명
2. 수석부회장: 1명
3. 부회장: 5명 내외

4. 사무국장: 1명
5. 총무: 10명 내외
6. 감사: 2명 이내

제 10 조(임원선출)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 단 인준을 받지 못할 시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사무국장, 총무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3. 제 19 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
4. 감사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, 총무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.

제 11 조(임원의 임기)

1.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차기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.
2.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정기총회일부터 기산한다.
3.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 12 조(보선)

1.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단, 부회장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보선한다.
2. 제 10 조 제 1항의 임원을 보선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고,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제 13 조(임원의 직무)

①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장: 본회를 대표하고, 총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2. 수석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회장직이 궐위된 때에는 차기 회장으로 취임한다. 이 경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3. 부회장: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모두 유고 시 졸업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사무국장: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회무를 총괄 집행하고 총무를 지휘하며, 총회, 이사회의 소집 실무와 의사록, 회칙, 등록부 등 본회의 문서를 관리·보관한다.
5. 총무: 총동문회 사업을 추진하고 회무를 집행하며, 회의 진행 보조와 의사록을 작성·보관한다. 또한 회장의 명을 받아 회원 간 연락과 출석을 도우며, 본회의 홍보를 한다.
6. 감사: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
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제 17 조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안건을 의결한다.

③ 감사는 본회의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④ 감사는 감사 결과 본회의 재산 또는 회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에게 임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장 고문, 명예회장

제 14 조(고문)

①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추대한다.

- ②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
제 15 조(명예회장)

- ①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추대한다.
- ②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
제5장 총회

제 16 조(총회)

-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1. 정기총회는 연 1회 9월 둘째 주 금요일에 소집한다.
 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이사의 결의나 회원 1/4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② 총회의 소집은 그 소집권자가 총회 개시일의 7일 전까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총회 소집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, 서울 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할 수도 있다.

제6장 이사회

제 17 조(구성)

- ① 본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둔다
- ② 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, 총무로 구성하며, 이들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- ③ 고문, 명예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
-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 약간명을 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 17 조의 2(소집 및 의결)

-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.
-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한다.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③ 이사의 소집은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서면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⑤ 이사는 서면, 전자우편, 메신저 또는 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⑥ 이사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, 사무국장이 보관한다.

제 18 조(의결사항)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, 제 1호 및 제 4호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1.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
2. 본회의 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의 승인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회칙의 개정초안
5.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

6. 임원의 보선
7. 회원의 자격 추인(제 7 조)
8.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9. 기타 중요사항

제 19 조(운영위원회)

- ① 본회는 기별 동문회, 지부 또는 산하조직의 대표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이사회의 의결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와 각 기별 동문회의 대표, 지부가 설치된 경우 그 지부장, 등록된 산하조직의 대표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주요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.
- ④ 이사회는 그 의결로 제 18 조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운영위원회의 협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.
- 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7장 재정

제 20 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세입, 세출,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.

제 21 조(재원)

- ①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 1. 기금
 2. 연회비(단, 신규 가입회원은 입회비로 갈음한다.)
 3. 이사회비
 4. 찬조금
 5. 사업수입금
 6. 기타 수입금
- ② 회비 등의 징수방법 및 회계의 구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22 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23 조(회계의 보고) 회장은 해당 연도의 회계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24 조(회계규정) 회계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8장 보칙

제 25 조(상벌규정) 상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26 조(등록) 제 5 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발족 즉시 임원명단 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 27 조(회칙개정)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9장 부칙 <제 2 차 개정>

- ① (시행일) 이 회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- ② (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③ (수석부회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회장 중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가 인준한 1명은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의 수석부회장으로 본다.
- ④ (감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회칙 시행 당시 감사가 공석인 경우, 시행일이 속하는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이 경우 제 10 조 제 4 항의 겸직금지 규정을 적용한다.
- ⑤ (다른 직명과의 관계) 이 회칙 시행 전에 사용하던 "사무총장"은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의 사무국장으로, "총무이사"는 같은 항 제 6 호의 총무로 본다.
- ⑥ (종전 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 회칙 제 17 조 제 2 항의 당연직 이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위를 상실한다. 다만,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 17 조 제 4 항에 따라 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.